

TaxFlash

July 2026 / No. 12



Page 1

New rules for a proxy in handling tax affairs – an update

세무대리인 관련 신규 규정 업데이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2026년 7월 6일 PMK-44¹를 공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납세자의 세무상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지정 및 역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PMK-44는 기존 PMK-229²를 폐지하며 이를 대체합니다. PMK-22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wC TaxFlash No. 01/2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세무 컨설턴트(*Tax Consultant*), 기타 개인(*Other Parties*) 및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s*)입니다. 세무 컨설턴트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국세기본법(*General Tax Provisions and Procedures Law, KUP Law*) 제32조에 규정된 자로서,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혈족·인척 2촌 이내의 친족을 의미합니다. 한편, PMK-44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타 개인(*Other Parties*)'을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자격 요건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세무 관련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현행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세무 컨설턴트(*Tax Consultant*)의 경우, 세무 컨설턴트 자격증(*Tax Consultant Licence*)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기타 개인(*Other Parties*)은 등록확인서(SKT)를 보유한 경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PMK-44는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적절한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MoF Regulation No. 44 Year 2026 (PMK-44) dated and effective from 6 July 2026

2. MoF Regulation No. 229/PMK.03/2014 (PMK-229) dated and effective from 18 December 2014

기타 개인

PMK-44는 기타 개인(*Other Parties*)을 세무 컨설턴트(*Tax Consultant*)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등록확인서(SKT)를 취득한 개인으로 정의하며, 이들은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의 자격 요건 및 SKT 취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향후 별도의 재무부령(*MoF Regulation*)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재무부(MoF) 출신 인력 의 경우, 일반적인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a. 재무부 퇴직 공무원
 - 재직 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퇴직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Cooling-off Period*) 이 경과해야 함
- b. 정년 이전에 퇴직한 전 재무부 공무원
 - 명예퇴직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퇴직해야 함
 - 재직 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공무원 퇴직 결정서에 명시된 퇴직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 이 경과해야 함
- c. 재무부 소속 정부계약직 공무원(PPPK) (*Pegawai Pemerintah dengan Perjanjian Kerja, PPPK*)
 - 근무 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불명예 퇴직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근로계약에 따른 정부직원(PPPK)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통지서에 명시된 고용 종료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Cooling-off Period*)을 경과하여야 함.

행정적 요건

• 국세청(DGT) 행정시스템 등록

세무 컨설턴트(*Tax Consultant*) 및 기타 개인(*Other Parties*)은 국세청(DGT)의 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유효한 자격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컨설턴트(*Tax Consultant*) : 유효한 세무 컨설턴트 자격증(*Tax Consultant Licence*), 기타 개인(*Other Parties*) : 유효한 등록확인서(SKT)

• 위임장

납세자의 세무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세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특별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을 전자 또는 서면 형태로 부여 받아야 하며, 해당 위임장은 전자적으로 또는 직접 국세청(DG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임 범위에 전자적 방식의 세무 의무 이행이 포함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에게 *Taxpayer Portal* 접근 권한 을 부여해야 합니다.

PMK-44에 따르면 특별위임장(*Proxy Letter*)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최소 기재사항 :
 - 위임하는 납세자의 성명, 납세자등록번호(NPWP) 및 서명
 - 세무대리인의 성명, 납세자등록번호(NPWP) 및 서명
 - 세무대리인의 자격 구분 (세무 컨설턴트, 기타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
 - 위임되는 구체적인 세무상 권리 및/또는 의무
 - 특별위임장의 유효기간 (신설 규정).
- b. 관련 인지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지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 c. 해당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Family Card)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세무대리인(Tax Proxy) 지정은 종료됩니다.:

- a. 특별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b. 납세자가 대리인 지정을 철회한 경우
- c. 세무 컨설턴트 자격증(Tax Consultant Licence) 또는 등록확인서(SKT)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d. 세무대리인이 조세범죄 또는 기타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대리인 지정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부여된 납세자 포털(Taxpayer Portal) 접근 권한도 함께 취소됩니다.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지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서(Revocation Letter)를 작성하여 국세청(DGT)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철회서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 제출은 PMK-44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절차입니다. 철회는 국세청(DGT)이 철회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대리인 지정 이전에 기존 대리인 지정에 대한 철회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컨설턴트 자격증(Tax Consultant License) 또는 등록확인서(SKT)의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세무대리인의 형사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세무대리인 지정이 종료되는 경우, 국세청(DGT)은 해당 지정 종료 사실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위임장 (Surat Penunjukan)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은 위임장(Surat Penunjukan)을 발급하여 자신의 직원 또는 기타 제3자를 지정함으로써 국세청(DGT)에 세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관련 서류를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MK-44는 신규로 위임받은 직원 또는 제3자가 위임된 세무상 권리 및/또는 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할 때마다 해당 위임장을 국세청(DGT)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과규정

PMK-44 시행 이전인 2026년 7월 6일 이전에 제출된 특별위임장(Proxy Letter)은 PMK-44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PMK-44는 경과규정에 따라, 세무 컨설턴트(Tax Consultant)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세무 브레벳(Brevet) 자격증 또는 공인된 대학에서 취득한 세무 관련 학위(최소 Diploma III 이상)를 보유한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개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 형태의 특별위임장(Proxy Letter)을 관할 세무서(Tax Office)를 통해 국세청(DGT)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의 권한은 위임된 세무상 권리 및/또는 의무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General Inquiries

Suyanti Halim
Abdullah Azis
Alexander Lukito
Andrias Hendrik
Anton A Manik
Antonius Sanyojaya
Brian Arnold
Gadis Nurhidayah
Hendra Lie
Hisni Jesica
Lukman Budiman
Margie Margaret
Omar Abdulkadir
Otto Sumaryoto
Turino Suyatman
Yuliana Kurniadjaja
Yunita Wahadaniah

Tax/Customs Technology and Governance

Avinash Rao

Legal and Inward Investment

Indra Allen
Adi Pratikto
Danar Sunartoputra
Fifiek Mulyana

Customs

Enna Budiman

Transfer Pricing

Ay Tjhing Phan
Dexter Pagayonan
Hasan Chandra
Peter Hohtoulas
Ryuji Sugawara

TLS Surabaya

Yessy Anggraini

Pillar Two

Nicholas Sugito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